

# 마포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2022. 9. 26.

복지도시위원회

##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2. 9. 5. 마포구청장

나. 회부일자 : 2022. 9. 13.

다. 상정일자 : 제258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위원회(2022. 9. 26.)  
상정, 심사, 의결

## 2. 제안설명요지

□ 제안설명자 : 아동청년과장

### 가. 제안이유

마포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운영사무를 역량 있는 법인 및 단체에 위탁하여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5조 제1항에 따라 마포구의회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함

### 나. 주요내용

(1) 위탁사무명 : 마포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사무

(2) 민간위탁 내용

(가) 위탁기간 : 2023. 1. 1. ~ 2025. 12. 31.(3년)

(나) 수탁자 선정방식 : 공개방식(재계약)

(다) 위탁사무의 내용 및 범위

- 마포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및 시설관리 전반에 관한 사무

(라) 위탁시설 현황

구 분	마포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소재지	마포구 희우정로 77 상가동 1층(망원동)	
규모	226.23㎡	
시설 설비	사무실(1), 상담대기실(1), 집단상담실(1), 개인상담실(3), 교육실(1)	
센터전경 및 위치		

※ 現 마포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위탁개요

- 위탁기간: 2020. 1. 1.~2022. 12. 31.(3년)
- 수탁기관: (학)명지전문대학

(마) 소요예산 : 총1,500,850천원(국비 10%, 시비 22%, 구비 68%)

(단위: 천원)

구 분	합계	인건비*	사업비	운영비**	비 고
합 계	1,500,850	1,219,600	115,290	165,960	
2023년	494,250	400,500	38,430	55,320	인건비 상승률 반영
2024년	500,250	406,500	38,430	55,320	"
2025년	506,350	412,600	38,430	55,320	"

\* 인건비 산정 : 센터장1명, 팀장2명, 팀원3명(서울시 청소년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 적용)

\*\* 운영비 내역 :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기타운영비 등

<참고>

(단위: 천원)

구 분	합계	인건비	사업비	운영비	비 고
2022년	484,000	385,250	38,430	60,320	

(3) 추진일정

- (가) '22. 10.17.~10.28. : 민간위탁운영체 선정방침 수립 및 신청서접수
- (나) '22. 11. 4.~11.10. : 선정심사위원회 구성 및 위원회 개최
- (다) '22. 11. 18. : 위탁계약 체결

3. 검토보고 (김동원 전문위원)

- 본 안건은 마포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사무를 위기청소년 맞춤형복지 서비스를 안정적이고 전문적인 역량이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고자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사무의 민간 위탁에 관한 조례」 제5조 제1항 규정에 따라 구의회 동의를 얻고자 제출한 안건입니다.
- 현 마포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 위탁사무는 학)명지전문대학과의 위탁기간이 '22.12.31.까지로 다가옴에 따라 위탁업체를 재선정하기 위하여 진행되는 사항으로, 주요 위탁내용으로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시설운영 및 시설 관리 전반에 관한 사무이며 위탁기간은 3년, 수탁기관 선정방법은 공개모집으로 하고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를 별도 구성하여 수탁기관을 선정하도록 하여 관련 규정에 부합된다고 판단됩니다.
- 따라서, 본 동의안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적법하게 제출된 동의안이며 사무의 민간위탁 요건도 충족하는 바, 동 사무의 민간위탁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 ※참고자료 [관계법령]

### ○ 지방자치법

#### 제13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

-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 2. 주민의 복지증진

나. 사회복지시설의 설치·운영 및 관리

라. 노인·아동·장애인·청소년 및 여성의 보호와 복지증진

#### 제117조(사무의 위임 등)

-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소속 행정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

-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 ○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9조(청소년상담복지센터) 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청소년에 대한 상담·긴급구조·자활·의료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8. 12. 18.>

② 제1항에 따라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및 특별자치도에 설치된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시·군·구의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업무를 지도·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2. 18.>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시·군·구에 설치하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시·군·구에 설치하는 지방청소년활동진흥센터와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4. 1. 21.>

④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청소년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하도록 할 수 있다.

⑤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법인으로 설치할 수 있다.

⑥ 제1항에 따른 업무의 구체적인 내용과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설치·운영 기준 및 종사자의 자격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3조(센터의 설치 및 운영) ① 마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청소년의 올바른 인격형성과 조화로운 성장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마포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비영리법인 또는 청소년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 등)  
① 구청장은 법령이나 조례에서 정한 구청장의 소관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국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요하는 사무  
4. 그 밖의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관리사무

제5조(의회 동의 및 보고)  
① 구청장은 제4조제1항 각 호의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하려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개정 2021.5.6.>  
② 재위탁 또는 재계약하는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원회 보고로 구의회의 동의를 갈음한다. 다만, 해당사무를 연속하여 민간위탁 하는 경우에는 구의회의 동의를 받은 때로부터 6년이 경과한 후 최초로 도래하는 재위탁 또는 재계약 시에 구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1.5.6.>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기타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8. 기타 : 없음